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September 17, 2021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정거래 소식지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8. 5.	• (이슈)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i) 임대료 감액청구권, (ii)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iii)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 개정 8. 11.	• (이슈)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지난 11일 하도급분야의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2023년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8. 18.	• (이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개정 시행 • (주요내용)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8. 18. 부터 시행

이슈	주요 내용
<u>데이터 법제 관련 학술 토론회 개최</u> 8. 24.	• (이슈) 데이터 법제 관련 학술 토론회 개최 • (주요내용) 공정위는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법제와 소비자 주권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
<u>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u> 8. 27.	• (이슈) 공정위,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른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보고·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지주회사 연간 사업보고 시 제출서류 현실화 및 제출 방식 등을 개선
<u>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u> 8. 31.	• (이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2. 5. 1. 부터 시행
<u>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u> 9. 1.	• (이슈)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및 공개 • (주요내용)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2021. 5. 1. 기준)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 및 공개함
<u>공정위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u> 9. 3.	• (이슈)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2021. 12. 30. 시행)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u>2021년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발표</u> 9. 6.	• (이슈) 기업결합 심사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1년 상반기 기업결합 심사 동향을 분석 및 발표
<u>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u> 9. 8.	• (이슈)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9. 8. 부터 2021. 9. 28. 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힘
<u>「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 개최</u> 9. 10.	• (이슈) 검색 알고리즘 관련 학술 토론회 개최 • (주요내용) 공정위는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

이슈	주요 내용
II. 주요 소식	
KDI,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8. 12.	• (이슈) 플랫폼 반독점 규제 관련 분석 • (주요내용)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국내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플랫폼 반독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인 시기상조라고 언급
검찰,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기업들 대대적 수사·기소 추이 8. 17.	• (이슈) 공정거래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추이 • (주요내용) 최근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공정위 조사의 방해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규정뿐만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죄를 적용하여 위반 대 기업들에 대해 수사·기소 범위 및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있음
중국 경쟁당국,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금지 규정안 발표 8. 17.	• (이슈) 중국 경쟁당국의 인터넷 기업 규제 동향 • (주요내용)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금지 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문제' 연구용역 발주 8. 23.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공고
공정위, '자기사업 우대 금지' 명문화 방침 8. 27.	• (이슈)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에 (i) '자기사업 우대행위 금지'를 불공정행위로 명문화하고는 내용, (ii) '검색 중립성'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iii) 플랫폼 경제의 양면·다면 시장성을 반영해 공정위의 시장획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임
공정위, 기술자문위 분과 확대 8. 30.	• (이슈) 기술심사자문위원회 분과 확대 • (주요내용) 공정위는 기술심사자문위원회 내에 AI 및 바이오 분야를 신설해 7개 분과로 확대할 예정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8. 31.	• (이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동향 • (주요내용)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정위, 5대 분야 시장분석 착수 계획 9. 1.	• (이슈) 공정위의 5대 분야 시장분석 착수 계획 • (주요내용) 공정위는 미디어 콘텐츠, 유통, 금융, 자동차, 플랫폼 모빌리티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그룹 구성 후 시장분석을 착수할 계획임

이슈	주요 내용
<u>주요국의 경쟁법 집행·정책 방향 소개 자료 발행</u> 9. 3.	• (이슈) 주요국의 경쟁법 집행·정책 방향 소개 자료 발행 • (주요내용) 공정위는 미국, EU 등 주요국의 적극적인 경쟁법 집행·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자료를 발행
III. 국회 발의법안	
<u>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유동수 의원안) 국회제출</u> 8. 18.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u>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이동주 의원안) 국회제출</u> 8. 18.	•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이동주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u>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전재수 의원안) 국회제출</u> 8. 18.	•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전재수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u>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오기형 의원안) 국회제출</u> 8. 20.	• (이슈)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의원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대리점법 일부개정안(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u> 8. 27.	• (이슈)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u>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양정숙 의원안) 국회제출</u> 8. 30.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u>대리점법 일부개정안(김한정 의원안) 국회제출</u> 9. 1.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정 의원은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김희곤 의원안) 국회제출</u> 9. 7.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Weekly공정거래 (2021년 8월 1주차)

I. 보도자료

1.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8. 5.)

- 공정위는 (i)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도입, (ii)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도입, (iii)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거래 조건 사전 통지 규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
-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개정 내용
유통 거래 공통 사항	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임대료, 판촉비용 부담, 매장 위치, 계약 갱신 등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 기준과 절차를 공개
	판촉비용	매장임차인의 법정 공동판촉행사 비용 부담비율(50%) 초과분에 대한 부담 주체를 유통업자로 명시
	기타비용 기재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금지행위 및 손해배상	대규모유통업법상 명시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보복조치의 금지와 기타 4가지의 불공정거래행위(상품의 저가 취득 등 부당한 이익 요구, 거래상대방 제한, 상품권이나 물품의 구입 강요,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를 금지, 보복조치 등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
	계약 갱신	자신이 계약 갱신 대상인지를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자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임대차거래 공통 사항	임대료 감액청구권	매장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 가능
	중도해지 위약금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음
	관리비	관리비·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보

	매장 이동	자신이 이동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규정
	영업시간 단축	매장임차인 등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전까지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단축을 요청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특성	명칭 변경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로 변경
	매장 출입	유통업자의 임대차 매장 출입 사유 및 사전 통지 규정
	상품권 등	매장임차인이 유통업자의 상품권 및 신용카드를 수취하도록 하고, 포인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위생 관리	매장임차인이 식품 위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

2.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8. 11.)

- 공정위는 지난 11일 중견기업 등 하위거래단계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분야의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발표.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된 기준은 2022. 1. 1. 이후 체결하는 협약(2023년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에게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할 것을 약정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직권조사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주요 개정 내용]

• 중견·중소기업의 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한 대기업에 점수 부여

- (i)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하위 협력업체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실적도 ‘하위 협력업체 간 협약 평가신청 실적’에 포함시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ii) 대기업이 1-2차사 및 2-3차사간 협약체결을 넘어 협약평가신청까지 독려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기술지원 및 보호 항목 배점 상향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이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보호’ 항목 배점을 상향. 특히 (i)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제조업종(3점→5점)과 (ii) 타 업종과 비교하여 배점이 낮았던 식품업종의 배점(1점→2점)을 상향

•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유도 (제조·건설업종)

- 법률상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산업안전비용 부담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해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또는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비용 지원 등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

• 금형 거래계약서 사용 활성화 (제조업종)

- 공정위가 보급한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준수하여 금형 거래계약서를 마련·사용하고 있는 경우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

• 법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

- 기존에는 (i) 하도급법 및 (ii) 공정거래법 중 '거래상지위 남용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감점하였으나, 거래상지위 남용 이외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도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 가능하도록 개정
- 하도급거래 담당 임직원의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 및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을 기존의 1.5배 수준으로 상향

• 기타

-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에 기여한 활동을 '효율성 증대' 실적으로 인정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 지급시 그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점수를 단계적으로 감점

3.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8. 18.)

-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i) 거래 취소 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면제, (ii)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중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는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정의 명확화, (iii)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중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 적용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8. 18. 부터 시행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주요 개정 내용]

• 거래 취소 시 이사회 의결 면제

- **(개정 배경)** 거래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실시해야 하므로,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대방도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불편함 존재
- **(개정 내용)** 거래당사자 일방이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공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중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는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정의 명확화**

- **(개정 배경)**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나,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 발생
- **(개정 내용)**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로 한정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중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 적용범위 확대**

- **(개정 배경)** 현행 규정상 비금융·보험사는 계열 금융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분기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을 실시할 수 있으나, 금융·보험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 제기됨
- **(개정 내용)** 적용대상을 모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확대

4. 데이터 법제 관련 학술 토론회 개최 (8. 24.)

- 공정위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및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공동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법제와 소비자 주권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
- 토론회에서는 (i) 데이터 활용 확대 측면에서 본 법적 보호와 면책의 문제, (ii) 데이터 이동권과 경쟁 이슈와 과제, (iii)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소비자 데이터 권리와 정책적 고려 사항, (iv)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 활용과 소비자 권리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짐
- 공정위에서는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시장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의 데이터 집중이 신규 플랫폼 시장진입 장애 요인이 되거나,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운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플랫폼 입점사업자와 경쟁하는데 활용하는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기업이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약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5.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8. 27.)

- 공정위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등의 시행을 위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8. 27.부터 9. 17.까지 행정예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개정 내용]

•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운영 관련 공정위 보고절차 마련

- **(개정 배경)** 2020. 12. 1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CVC의 자금조달 및 투자 등에 있어 일정한 행위제한 규제를 부과하고, 사업자들이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함
- **(개정 내용)** 공정위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i) 일반지주회사가 CVC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 종류를 규정하고, (ii)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 및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 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 채권 등 매각내역, 투자, 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관련 서류 양식을 마련

• 벤처지주회사 사전신청 절차 및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

- **(개정 배경)**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6.4. 입법예고)은 기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또는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도 공정위에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 지위를 인정해주는 ‘사전신청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현황을 제출하도록 함께 규정
- **(개정 내용)** 공정위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i) 사업자가 벤처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ii) 벤처지주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해야 할 내부거래 현황 보고서의 작성양식 및 작성지침을 마련

• 지주회사 연간 사업보고 제출서류 및 제출방식 등 개선

- **(개정 배경)** 현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주식소유현황, 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사업보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
- **(개정 내용)** (i) 현행 고시는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상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결산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개정하고, (ii) 현재 지주회사들이 사업보고 자료를 기업집단포털시스템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된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우편 제출 없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보완

6.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8. 31.)

- 공정위는 (i) 상품·용역 내부거래 중 물류·IT서비스 업종 내부거래 내역을 구체화, (ii) 상품·용역 연간 거래금액 외에 분기별 거래금액도 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2. 5. 1. 부터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상품·용역 내부거래 중 물류·IT서비스 업종 내부거래 현황 공시 구체화

- **(개정 배경)**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정보이용자가 구체적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 내용)**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공시를 구체화하여 계열회사 간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개정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 원 이상)인 경우

• 상품·용역의 연간 내부거래금액을 분기별 금액으로 구분하여 공시

- **(개정 배경)**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거래금액만 공시하여 정보이용자가 분기별 내역은 알 수 없다는 지적 제기됨
- **(개정 내용)** 연간 거래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을 같이 명시하도록 개선

7.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9. 1.)

- 공정위는 2021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하였음
*해당 71개 기업집단은 (i) 총수 있는 기업집단 60개와 총수 없는 기업집단 11개, (ii) 2년 연속 지정된 집단 63개와 신규지정집단 8개로 분류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i) 내부 지분율 현황과 (ii) 그 세부 내역(총수일가, 공익법인, 해외계열사, 금융보험사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횡단면, 시계열 분석, (iii) 사익편취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 (iv)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분석 결과,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함
- 또한, (i) 신규지정집단에서 총수 2세가 계열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 수도 연속지정집단 대비 다수인 점, (ii) IT주력집단(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마블)에서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규지정집단과 IT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함
- 이러한 분석결과,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자 자사주나 비상장사를 통한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통해 시장 감시를 유도하는 한편, 해외계열사 공시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후속작업을 추진할 예정임
*내부거래 현황 및 지주회사 현황은 올해 11월, 지배구조 현황은 올해 12월 정보공개 예정

8. 공정위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9. 3.)

- 공정위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2021. 12. 30. 시행)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9. 3. 부터 2021. 9. 23. 까지 20일간 행정예고

* (i)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ii)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iii)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iv)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주요 개정 내용]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관련)

- (개정 배경)** 2020. 12. 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021. 12. 30. 시행)은 공익법인에게 (i)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ii)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함(법 제29조).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2021. 6. 4. 입법예고)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내부거래를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설정*(시행령안 제34조)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행위(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개정 내용)**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공시 의무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익법인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결 후 7일 이내로 공시 시기를 설정하고 공시대상회사에 적용되던 특례 규정도 똑같이 적용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제도 관련)

- (개정 배경)** 개정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게 (i)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ii)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함(법 제28조 제2항)
- (개정 내용)**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공시 의무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세부 공시절차 등은 현행 공시대상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

- (공익법인과 거래 현황 공시 관련)

- (개정 배경)** 현재 공시대상회사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과의 내부거래 중 일부만 공시하고 있는데, 공익법인에게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시대상회사에게 공익법인과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짐
- (개정 내용)**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도록 신설

-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 (개정 배경)** 시행령 개정안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제32조 제1항)
- (개정 내용)** 이에 맞추어 고시 개정안에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

-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의 공시해야 하는 계열회사 범위도 동일하게 확대

- (주요주주의 범위 설정에 따른 공시 반영)

-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요주주의 범위를 명시하고, 1% 이상 보유주식 변동시 공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고시 개정안에서도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하도록 개선

- (공시 기준일 및 기한 합리화, 용어정비 등 기타)

- 기업집단현황 일부 공시사항 공시기준일이 중복되어 두 번 공시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윤년(閏年)의 경우 착오로 인한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 공시기한을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로 개선
- 법 및 시행령과 다르게 공시규정에 명시된 용어*를 법령과 일치시킴

*상호채무보증 → 채무보증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개정 배경)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에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이를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
- (개정 내용)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개정 배경) 개정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게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이를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
- (개정 내용)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

9. 2021년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발표 (9. 6.)

- 공정위는 2021년도 상반기 기업결합 심사 동향을 분석하여 (i)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증가를 중심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크게 증가한 점, (ii)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 건수 및 금액이 코로나19 이전 2019년도 수준으로 회복한 점, (iii) 제조업 분야 기업결합은 감소 추세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 반도체 분야 및 친환경 정책 관련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결합은 증가한 점, (iv) 서비스 분야 내 정보통신방송업종의 기업결합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특히 게임 등 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결합이 다수인 점, (v) 수평결합 및 수직결합보다 혼합결합의 비중이 높은 점 등을 주요 분석결과로 발표

*국내기업이 국내기업 또는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국내-국내, 국내-외국 간 결합)

10.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9. 8.)

- 공정위는 (i)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ii) 간이신고의 경우 인터넷 신고 원칙을 반영하고, (iii) 타법 개정에 따라 용어·인용조문 등을 변경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9. 8. 부터 2021. 9. 28. 까지 행정예고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개정 내용]

• 거래금액 및 국내활동 기반 신고기준 구체화

- (개정 배경)** 개정 공정거래법(2021. 12. 30. 시행 예정)은 기존의 회사규모(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기준에 더하여 거래금액 기준 신고 의무*를 도입하였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세부적인 산정 기준을 고시로써 규정할 필요성 존재
 - * (i)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거래금액 기준), (ii) 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국내시장 활동 기준)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개정 공정거래법 제11조 제2항)**
 - **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 직전 3년간 (i)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 대상 상품·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했거나, (ii) 국내 연구·개발시설 임차, 연구인력 활용 등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이었던 적이 있는 경우**
- (개정 내용)** 거래금액과 관련하여 (i) 주식취득·소유의 경우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을, (ii) 합병의 경우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iii)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iv) 회사설립 참여시 합작계약상 최다출자자 출자금액을 각 거래금액으로 하도록 정함. 또한 국내활동 기준과 관련하여 (i) 소비자 수 기준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를 기준으로, (ii)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피취득회사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정함

•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

- (개정 내용)**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은 심사에 많은 자료가 요구되지 않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
 - * (i) 특수관계인 간 결합, (ii) 상대회사 임원총수 1/3 미만 임원 겸임, (iii) 사모펀드,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

•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문 번호 변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을 반영하여 (i)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ii)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각 변경하고, (iii) 타법을 인용하는 경우 조문 번호도 개정된 타법에 부합하도록 수정

11.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 개최 (9. 10.)

- 공정위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
- 토론회에서는 (i) 검색 비중립의 유인, 효과, 규제 및 (ii) 검색 알고리즘과 경쟁정책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짐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노출 순위가 중소 입점업체의 사업성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노출 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함. 이에 따라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한편, 개별 사업자를 조사·시정하는 것 이외에도 플랫폼 분야의 거래 규칙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 제시

II. 주요 소식

1. KDI,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8. 12.)

-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12일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국내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플랫폼 반독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 상황에 비추어 시기상조라고 언급
- 또한 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 범위가 넓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

2. 검찰,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기업들 대대적 수사·기소 추이 (8. 17.)

- 최근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공정위 조사의 방해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규정뿐만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죄를 적용하여 위반 대기업들에 대해 수사·기소 범위 및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있음
- 지난 2017년 4월 18일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제67조 제10호에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형사처벌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검찰은 지난 해부터 위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위와 같은 공정위 조사방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하도급법 위반 등의 경우 일반법인 형법상 증거인멸죄를 통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짐

3. 중국 경쟁당국,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금지 규정안 발표 (8. 17.)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7일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금지 규정안'을 공개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 위 규정안은 반부정경쟁법, 전자상무법의 하위 지침으로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i)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거나, (ii) 특정 입점 업체의 고객 유입량을 제한하거나, (iii) 자기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가 경쟁 플랫폼에는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인터넷 분야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함
- 최근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현행 법규를 갖고 인터넷 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 단위의 중장기 법제 로드맵 문건에서 반독점 관련 입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어, 이번 규정안은 로드맵 이행의 일환으로 분석됨

4.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문제' 연구용역 발주 (8. 23.)

-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공고함
- (i) 오픈마켓 등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현황, 거래방식, 거래관여도 및 분쟁유형과 해결절차 조사, (ii)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의 경험·인식 조사, (iii)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별 규제현황 및 시사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내용이 될 예정임

*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가격비교사이트, SNS, C2C, 라이브커머스 등

5. 공정위, ‘자기사업 우대 금지’ 명문화 방침 (8. 27.)

- 공정위 ICT전담팀에 의하면, 공정위가 제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에 (i) ‘자기사업 우대행위 (self-preferencing) 금지’를 불공정행위로 명문화하는 내용, (ii) ‘검색 중립성’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iii) 플랫폼 경제의 양면·다면 시장성을 반영해 공정위의 시장획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함

6. 공정위, 기술자문위 분과 확대 (8. 30.)

-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초 현재 5개 분과*로 운영 중인 기술자문위원회 내에 인공지능(AI)·바이오 분과를 신설하여 7개 분과로 확대할 예정
*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
- 공정위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은 관련 분야 대학교수나 공공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고 “기술유용사건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관련 다른 사건에서도 기술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일종의 풀(pool)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7.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8. 31.)

- 지난 31일,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대하여 (i)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ii) 등록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iii) 앱 심사의 부당한 지연 행위 등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8. 공정위, 5대 분야 시장분석 착수 계획 (9. 1.)

- 공정위는 (i) 미디어 콘텐츠, (ii) 유통, (iii) 금융, (iv) 자동차, (v) 플랫폼 모빌리티 5개 분야를 디지털전환으로의 변화 속도가 빠른 산업으로 선정하고, 분야별로 시장 분석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올해 말까지 결과 보고서를 만들 계획임
- 5대 분야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총괄분과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만들 계획임

9. 주요국의 경쟁법 집행·정책 방향 소개 자료 발행 (9. 3.)

- 공정위는 미국, EU 등 주요국이 디지털플랫폼 분야에 대한 여러 규제 법안을 발의하고, 관련 경쟁당국 인사를 임명하는 등 적극적인 경쟁법 집행·정책 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소개하는 자료를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80호로 발행

III. 국회 발의법안

1.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유동수 의원안) 국회제출 (8. 18.)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 공정위 입법예고안과 비교한 유동수 의원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법 적용범위 관련:** 공정위안은 이와 관련하여 개정한 바 없으나, 유동수 의원안은 상조서비스 공급계약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안 제35조)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제6항)
- **역외적용 규정 관련:** 공정위안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유동수 의원안은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되, 국제사법 제2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전자상거래 등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만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토록 함(안 제5조)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공정위안은 맞춤형 광고 제공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경우 일반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유동수 의원안은 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만 규정하고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를 거부하고 일반광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안 제18조 및 제32조)
-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외관책임 관련:**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청약 접수 등 거래 과정의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으나, 유동수 의원안은 (i)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고, (ii) 청약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기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신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안 제25조 내지 제27조)
- **C2C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관련:** (i) 공정위안은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유동수 의원안은 이 경우 분쟁조정기구, 법원, 소비자(개인판매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에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ii) 공정위안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유동수 의원안은 C2C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판매자와 소비자간 계약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전자상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 및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중 개인이 아닌 사업자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31조)
- **금지·무효화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범위 관련:** 공정위안은 이와 관련하여 개정한 바 없으나, 유동수 의원안은 금지·무효화의 대상이 되는 약정에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배제(안 제25조 내지 제28조 관련)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추가(안 제66조)

2.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이동주 의원안) 국회제출 (8. 18.)

- 국회 정무위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 등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 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을 20일 이내로 규정(안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3.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전재수 의원안) 국회제출 (8. 18.)

- 국회 정무위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 등에게도 현행법의 보호수단이 제공되어 중소기업 납품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을 현행법의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외적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동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3조제1항제1호)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4.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오기형 의원안) 국회제출 (8. 20.)

-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안 제90조 제10항 신설)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5. 대리점법 일부개정안(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 (8. 27.)

- 국회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i)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정위에 통보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지사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11조의2, 제27조 및 제32조), (ii) 현행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시정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24조의2), (iii) 시·도지사에게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안 제27조의3), (iv)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시·도지사 역시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34조 제4항)을 신설하는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6.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양정숙 의원안) 국회제출 (8. 30.)

-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커머스업체들이 입점사업자가 사업의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신고·등록·허가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무등록 업체에 의해 소비자 및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자계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안 제9조의2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제1호의2)을 신설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7. 대리점법 일부개정안(김한정 의원안) 국회제출 (9. 1.)

-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계약의 갱신, 대리점 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법에서 금지한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안 제18조, 제23조, 제25조 제1항, 제34조 제2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8.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김희곤 의원안) 국회제출 (9. 7.)

-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배달앱, 중고거래앱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온라인에 등록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협박, 사기 등의 범죄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안 제11조 제3항, 제40조의2)을 신설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